

수원지방법원 2020. 6. 18 선고 2019재나185 판결 [토지인도 및 건물철거]

전 문

원고(재심피고, 준재심피고)

A

피고(재심원고, 준재심원고)

망 B의 소송수계인 C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0. 6. 18.

제1심판결,

재심대상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 1. 27. 선고 2010가단23296 판결 준

재심대상조서 수원지방법원 2012나6773호 사건에 관한 2013. 3. 28.자 조정조서

주 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 및 준재심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재심 및 준재심 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 준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 항 소 취 지 및 재 심 청 구 취 지

1. 청구취지

가. 주위적 청구취지: B은 원고(재심피고, 준재심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D, E, F, G, H, I, J(이하 ‘D 등’이라 한다)에게 안산시 상록구 K 임야 140,158㎡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7㎡(화장실), 같은 감정도 표시 5, 6, 7, 8, 9, 10, 11, 12,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67㎡(주택), 같은 감정도 표시 13, 14, 15, 16, 17, 18, 1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13㎡(창고) 지상에 있는 각 건물을 철거하고, 위 각 토지를 인도하라.

나. 예비적 청구취지: B은 원고와 D 등으로부터 3,754,92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와 D 등에게 안산시 상록구 K 임야 140,158㎡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7㎡(화장실), 같은 감정도 표시 5, 6, 7, 8, 9, 10, 11, 12,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67㎡(주택), 같은 감정도 표시 13, 14, 15, 16, 17, 18, 1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13㎡(창고) 지상에 있는 각 건물을 철거하고, 위 각 토지를 인도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와 D 등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재심청구취지 및 준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 준재심대상조서를 모두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의 서면에는 제1심판결과 준재심대상조서를 모두 취소한다는 기재가 되어있고, 청구원인을 보더라도 제1심판결과 준재심대상조서를 모두 다투고 있으므로 재심 청구와 준재심 청구를 병합하여 청구한 것으로 선택한다)

이 유

1. 재심대상판결 및 준재심대상 조정조서

아래의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와 D 등은 원고를 선정당사자로 삼아 B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0가단23296호로 토지인도 및 건물철거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2. 1. 27. 원고와 D 등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B은 원고와 D 등에게 안산시 상록구 K 임야 140,158㎡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7㎡(화장실), 같은 감정도 표시 5, 6, 7, 8, 9, 10, 11, 12,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67㎡(주택), 같은 감정도 표시 13, 14, 15, 16, 17, 18, 1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13㎡(창고) 지상에 있는 각 건물을 철거하고, 위 각 토지를 인도하라’는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B은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여 수원지방법원 2012나6773호로 항소하였고, 항소심 사건은 2013. 3. 28. 원고, B 및 조정참가인 피고(재심원고, 준재심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L가 참석한 가운데, 위 당사자들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었고, 같은 날 조정조서(이하 ‘이 사건 조정조서’라 한다)가 작성되면서 이 사건은 종결되었다.

조정조항

1. B 및 조정참가인들은 2015. 11. 30.까지 원고와 D 등에게 안산시 상록구 K 임야 140,158㎡ 중 별

지 감정도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7㎡(화장실), 같은 감정도 표시 5, 6, 7, 8, 9, 10, 11, 12,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67㎡(주택), 같은 감정도 표시 13, 14, 15, 16, 17, 18, 1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13㎡(창고) 건물을 모두 인도하고, 위 각 ‘ㄱ’ 부분 7㎡, ‘ㄴ’ 부분 67㎡, ‘ㄷ’ 부분 13㎡ 대지를 모두 인도하고, 위 각 건물의 소유권을 모두 포기한다.

2. 원고 및 D 등의 나머지 청구는 포기한다.

3. 소송총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다. B은 2019. 6. 17. 사망하였는데 사망 시 배우자 L, 아들인 피고 등이 있었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 의하면 재심의 소는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가 제기된 경우,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될 경우 제1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지만, 항소심에서 제1심판결을 파기하는 판결이 확정되거나 조정이 성립되어 그 조정조서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되는 때(민사소송법 제220조, 민사조정법 제29조)에는 제1심판결은 실효되어 확정된 종국판결이 될 수 없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취소를 구하는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항소가 제기되어 그 항소심에서 조정이 성립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바, 앞서 인정한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항소심에서의 조정 성립에 따라 제1심판결인 재심대상판결은 실효되어 '확정된 종국판결'에 해당할 수 없게 되었고, 이 경우 피고가 항소심의 조정조서에 대하여 준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되, 이미 실효된 제1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재심대상적격이 없는 제1심판결을 재심대상판결로 삼은 것으로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준재심의 소에 대하여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조정 시 피고의 소송대리인이 조정의 의미를 정확히 설명해주지 않았고, 소송과정 중 피고의 소송대리인이 점유취득시효 주장을 제대로 하지 않았으며, 항소심 재판부가 점유취득시효 주장을 받아들여주지 않았다. 또 피고는 이 사건 조정 성립 이후 청구취지 기재 건물 중 일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조정조서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 제7호 또는 제8호의 각 재심사유가 있다.

나. 판단

1)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하고, 조정이 성립한 경우에는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민사조정법 제28조, 제29조). 한편 준재심의 소는 조정이 성립된 뒤 5년이 지난 때에는 제기할 수 없고, 다만, 준재심의 사유가 조정이 성립된 뒤에 생긴 때에는 위 5년의 기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계산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461조, 제456조 제3항, 제4항).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사건 조정이 2013. 3. 28. 성립되었고,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인 2019. 11. 21. 이 사건 준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음은 앞서 인정한 것과 같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그런데

피고가 주장하는 준재심사유들은 모두 이 사건 조정 이후에 발생하였다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준재심의 소는 그 제소기간이 도과된 뒤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2) 나아가 피고의 주장대로 피고가 2015. 4. 13. B로부터 안산시 상록구 K에 있는 M호 흙벽돌조기와지붕 단층주택 24.07㎡를 증여받은 사정도 보이나, 이것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의 “판결의 기초가 된 판결, 그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가 아님도 명백하다.

3)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준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4. 피고의 나머지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소유의 건물의 주소를 ‘안산시 상록구 N’로 권리변경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위 청구는 그 자체로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않을 뿐 아니라, 재심대상판결의 취소와 그 청구 기각을 구하는 이외에 재심의 소에 병합하여 새로운 청구를 제기할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1997. 5. 28. 선고 96다41649 판결 등), 그와 같은 권리변경등기 청구는 이 사건 재심소송에서 청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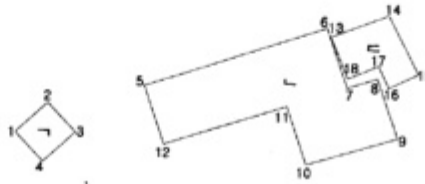
이 사건 재심의 소와 준재심의 소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정덕수, 판사 하성원, 판사 송승용

감 정 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3필

평



법 계

구 분	명 칭
	화장실
	주택
	참고

면 적 표 시

지번 부호	면적(㎡)
	7
	67
	13